

## 2025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Beauty Creator Challenge)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K-뷰티 유망 중소기업을 민관 협업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변경사항 : 신청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기간	2025.10.14.(화)~10.28.(화)	2025.10.14.(화)~11.4.(화)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민관 협업을 통해 K-뷰티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온라인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대상]**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쏘분야(화장품·이너뷰티·기기 등) 중소기업\* 또는 시제품 단계 이상의 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내수 또는 '24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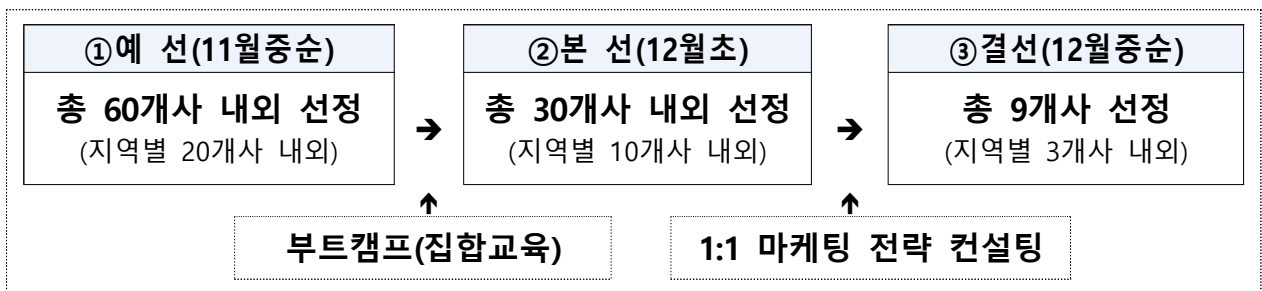
\*\* 제품테스트 결과보고서, 기타 시제품 개발 및 기능 검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품평회용 제품 제공 필수

□ [신청분야] 진출희망 지역 (미국, 일본, 아세안) 별로 모집

- 1개 지역을 선택하여 1개 제품(라인)으로 신청 (중복 불가)

□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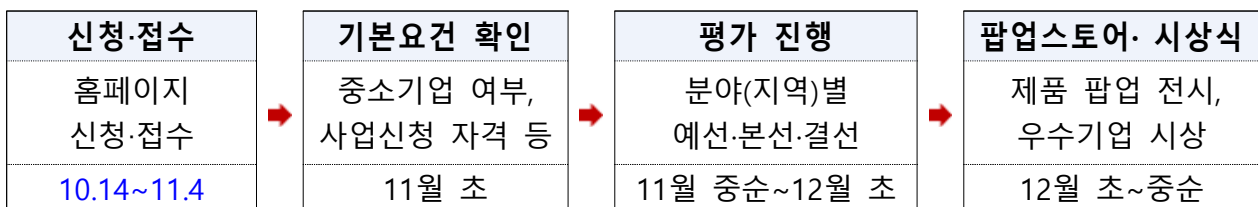
- 지역별로 신청·접수 후, “예선, 본선, 결선” 3단계 평가 진행
- 각 단계별 선정기업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진행, 최종 우수기업에 시상 및 지정된 글로벌 쇼핑 플랫폼별 입점·마케팅 지원



\* 단계별 선정기업 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 가능

\*\* 부트캠프 및 1:1 마케팅 전략 컨설팅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각 지역 플랫폼에서 진행

□ 추진 일정



**2.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 선정절차

- (예선) 참여기업이 제출한 제품·마케팅 전략서와 발표영상(3분 이내)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 (본선) 제품력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발표평가 진행

- **(결선)** 마케팅 전략서(전략 컨설팅 결과 등 반영) 기반 **발표평가(80%), 품평회(20%)\***를 동시 진행하여 **점수 합산**

\* 업계 전문가, 뷰티 인플루언서, 재한외국인 등을 초청하여 제품 블라인드 테스트

## □ 지원내용

- **(본선진출<sup>60개사내외</sup>)** 해당 권역 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 노하우, 마켓 인사이트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 교육 (15시간 내외)
  - **(결선진출<sup>30개사내외</sup>)** ①제품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고도화 컨설팅 (기업당 4시간 내외) ②브랜드 노출을 위한 팝업 전시
    - (컨설팅) 플랫폼 MD 등을 1:1 매칭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
    - (팝업전시) 서울 상업중심지 內 팝업스토어 운영 (2~3주 예정)
  - **(우수<sup>9개사내외</sup>)** ①장관상 등(대상·최우수·우수 3개 지역별, 각 1개사) ②온라인 마케팅 지원 ③차년도 중기부 수출·창업 지원사업 연계
    - (마케팅지원) 플랫폼 입점여부 및 진출희망 지역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하며, 순위별로 플랫폼 내 사용 가능한 바우처\*\* 추가 지원
      - \* (지원예시) 플랫폼 입점을 위한 1:1 심화 컨설팅(관세/수출신고, 상표) 등, 현지 매체 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리뷰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등
      - \*\* (바우처 지원규모) 대상 10백만원, 최우수 7백만원, 우수 5백만원
    - (사업연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우선 선정(택1), 초기창업 패키지 가점
- ※ 단, 연계사업의 자세한 내용(붙임7)은 '25년 기준으로 차년도에 변동될 수 있음

### 3. 사업 신청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24년 기준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기업(내수기업 포함)
- 시제품 단계 이상의 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 제품테스트 결과보고서, 기타 시제품 개발 및 기능 검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품평회용 제품 제공 필수

####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 '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 및 동일 대표자의 복수 사업자로 신청한 기업
-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체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 [신청기간] 2025. 10. 14.(화) ~ 2025. 11. 4.(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유의 사항**

-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처리)**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 서류 보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 공고기간 이후 보완(제출)서류는 **불인정**
-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연번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발급처)
1	필수	참여기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붙임1 참고
2		제품 및 마케팅 전략서(예선평가 자료) * 한글(최대 10페이지 이내) 또는 PPT(최대 20페이지 이내)	PDF 변환 후 파일 업로드
3		발표영상(예선평가 자료) * 제품 및 마케팅 전략서를 기반으로 제작, 500MB 이내	파일 업로드
4		기업(신용) 정보 관련 동의서	온라인 동의
5		청렴이행서약서	
6		개인 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온라인 동의 및 스캔본 업로드
7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8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홈택스
9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법인기업 : 법인, 개인기업 : 대표자	국 세 : 홈택스 지방세 : 위택스
10		시제품 보유 관련 서류(예비창업자에 한함) * 제품테스트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MSDS 등	압축하여 업로드
11	선택*	수출 관련 인증 및 상표권 증빙자료 * MoCRA(미국), PMDA(일본), 동남아(CFS), OTC 등	해당 시 제출, 압축하여 업로드
12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등	

※ 서류 제출 시 선정평가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4. 평가 · 선정

### □ 평가 내용 · 기준

- **(내용)** 신청기업 제품의 수출역량 및 제품력, 사업성 등을 평가
- **(기준)** 단계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총점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과락, 단계별 평가 기준(안)은 <붙임3> 참고

### □ 평가방법

- 기본요건 검토 후 충족기업에 대해 평가단계 진행
  - **(예선)** 지원제외 여부 및 기본요건 확인 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 **(본선)**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이 발표평가 실시
  - **(결선)** ①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이 발표평가 실시(80%),  
②뷰티 인플루언서, 재한외국인 등이 제품 블라인드 테스트(20%)

## 5.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전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77 02-2130-1482	-
신청 시스템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help@gobizkorea.or.kr

## 6.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수출처의 추진 사업 수행기관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 : 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②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기업 등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 진행 도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평가 단계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미참여시 중도취소 또는 사업 미참여로 간주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우수기업은 시상식 참여 필수(12월 예정)

- 중기부의 K-뷰티 우수제품 선정사업인 「K-뷰티 슈퍼루키 워드영」,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 사업 참여 후 3년간 주관기관의 성과(진출지역 플랫폼 판매실적 등) 조사 협조 동의 필수



[붙임2] 제품 및 마케팅 전략서 (파일 업로드)

1. 기업 현황

회사명		설립연월	
종업원 수		매출액('24년)	

2. 수출역량 및 준비도

수출액 (‘24년 1월~12월)		수출국 수 (‘24년)	( )개
수출/마케팅 전담 인력	( )명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수출 관련 상표권 보유 현황*	( )개	수출 관련 인증 보유 현황* (예: MoCRA 등)	( )개
온라인 판매채널 보유 여부* (예: 아마존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채널명, 계정/ID 등 기재	온라인 판매실적* (‘24년 1월~12월)	보유 시 기재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시 기재		

\* 외국어 카탈로그, 상표권 및 인증 보유 현황 작성 시 증빙자료 제출 必

3. 브랜드 및 제품 소개

- (브랜드) 브랜드스토리 설명 및 제품라인 구성 등
- (제품) 제품명, 용도, 특성, 해외시장 적합성, 제품 경쟁력,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요소 등

4. 마케팅 전략

- 목표시장(국가) 및 선정 사유, 고객 타겟팅
- 시장 조사현황(국내외 경쟁업체, 시장점유율 등), 제품 포지셔닝
-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 전담 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등

※ 위 내용을 한글(최대 10페이지內) 또는 PPT(최대 20페이지內)로 작성, PDF 변환 후 제출

※ '3. 브랜드 및 제품 소개', '4. 마케팅 전략'을 설명한 영상자료 별도 제출 (최대 3분, 500MB)

**[붙임3] 참여기업 평가기준(안)**

**□ 예선**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요건*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서면평가 (100점)	①수출역량 및 준비도 (20점)	24년 기준 수출실적(무역통계진흥원 실적 기준)
		수출/마케팅 전담 인력 보유 여부**
	②제품력(50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자사 영문 홈페이지, 마케팅 제품 영문 카탈로그, MoCRA·OTC 등 국외 인증, 국내외 상표권 등 보유 여부)
		해외시장 적합성 및 제품 경쟁력 등
③마케팅 전략(30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의 차별성	

\* 기본요건 1개 이상 부적격 시 지원 제외

\*\* 허위 작성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 불이익 또는 선정 취소사유에 해당 (증빙자료 제출 기한 및 방법은 선정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본선**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제품력 (30점)	①해외시장 적합성	제품의 현지 시장 호응도, 시장 적합성 등
	②경쟁력 및 차별점	가격 경쟁력,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요소 등
마케팅 (70점)	③시장조사 및 제품 포지셔닝	시장 및 타겟고객 사전조사 노력도, 현지 시장 제품 포지셔닝 적합성 등
	④브랜드스토리	제품과 브랜드스토리 유기성 등
	⑤마케팅 전략 차별화	타사 제품 대비 마케팅 차별성 등
	⑥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플랫폼 활용 마케팅, 외부 마케팅, 마케팅 전략과 제품 부합도 등

**□ 결선**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제품력 (20점)	①전문가 품평	전문가 평가위원 품평
	②소비자 품평	소비자(제한외국인, 인플루언서 등) 품평
마케팅* (80점)	③시장조사 및 제품 포지셔닝	시장 및 타겟고객 사전조사 노력도, 현지 시장 제품 포지셔닝 적합성 등
	④브랜드스토리	제품과 브랜드스토리 유기성 등
	⑤마케팅 전략 차별화	타사 제품 대비 마케팅 차별성 등
	⑥온오프라인 마케팅전략	플랫폼 활용 마케팅, 외부 마케팅 전략 적절성 등
	⑦마케팅 전략 개선도	개선된 마케팅 전략 구체성 등

\* 1:1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사항 위주로 평가자료 작성

## [붙임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귀중

본인은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mss.go.kr) 및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따른 과세정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수출성과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등),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li> <li>▶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발전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li> <li>▶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li> </ul>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지위, 경영지위, 영업지위, 영업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li> <li>·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li> <li>·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제)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li> </ul> </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직간접,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공급기업, 공급액, 문서번호, 발급일 등)</li> <li>▶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영업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채무상황) 등</li> <li>▶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li> <li>▶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정책지원내역 등</li> </ul>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사업평가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5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또는 스캔본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귀중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 평가 및 지원 이력관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지원 이력 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측정,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b>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b>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도,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개인식별정보(대표자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b>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b>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2025년      월      일

기업명			
연락처	(      )      -      -      -	대표자	(서명)

## 청 령 이 행 서 약 서

당사와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평가, 선정 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선정 또는 협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기 업 명 ○ ○ ○  
대 표 자 ○ ○ ○ (인)

[붙임7]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연계지원 사업 내용(25년 사업 공고문 기준)

① 증기부 수출바우처사업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 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 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계)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수출바우처 메뉴판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중기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가능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등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동 사업 공고문 참조 요망

## ②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 지원내용

- 546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70% 지원

### □ 트랙별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패스트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붙임1】</b>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li> <li>*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li> </ul>
일반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붙임2】</b>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li> <li>○ <b>【붙임1】</b>과 <b>【붙임2】</b>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li> </ul>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 \* 원전 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원 지원 (신청 시 원전분야 별도 선택 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필요)
-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 공고문 참조 요망

### ③ 중기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 □ 사업목적

- 온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수출기업 육성

#### □ 지원내용

- (온라인 수출지원)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한 입점·판매·마케팅, 콘텐츠 마케팅·라이브커머스, 해외향 자사몰 구축·마케팅 등 지원
-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수출 물품의 해외 물류비 할인, 풀필먼트 이용료 지원, 글로벌 쇼핑몰 내 배송할인 마케팅 등 지원

세부사업		지원내용	
온라인 수출 지원	④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직접판매	글로벌 쇼핑몰(Shopee, Qoo10 JP, Amazon) 내 직접 입점 및 판매 지원(쇼핑몰 내 개별마케팅(교육컨설팅 포함) 및 전용 기획전 운영·홍보 등)
		위탁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셀러 계정에 참여기업 상품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등 전 과정 판매대행
		마케팅지원	제품 콘텐츠 제작(숏클립), 글로벌 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 쇼핑 특수기 기획전, 판촉마케팅, 콘텐츠 활용교육 등 지원
	② 자사몰 진출	기반조성	수행기관의 컨설팅 기반 해외향 자사몰 신규 구축, 리뉴얼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IT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
		일반육성	해외향 자사몰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자사몰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동반성장	해외향 전문몰을 보유 중인 온라인 수출기업의 전문몰 홍보·마케팅, 리뉴얼, IT서비스와 더불어 타 중소기업 제품 입점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공동 물류 지원	③공동물류 물류지원	물류비 상시할인	수행기관(협약 물류사)을 통한 온라인 수출품목의 해외 배송비 할인 및 목록통관 수출신고 변환 지원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 공고문 참조 요망

④ 초기 창업 패키지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b>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b></li> <li>*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li> <li>**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li> <li>• <b>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b></li> <li>*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li> <li>**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총 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사업비</th> <th colspan="2">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7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20%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만원 (7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만원 (2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비 목</th> <th>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td> <td>•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td> </tr> <tr> <td>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td> </tr> <tr> <td>인건비</td> <td>•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td> </tr> <tr> <td>지급수수료</td> <td>•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td> </tr> <tr> <td>여비</td> <td>•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교육훈련비</td> <td>•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광고선전비</td> <td>•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body> </table>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100%)	7,000만원 (70%)	1,000만원 (10%)	2,000만원 (20%)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100%)	7,000만원 (70%)	1,000만원 (10%)	2,000만원 (20%)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예시																																			
	① 시장진입		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②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③ 실증 검증		멘토링, 기술 실증 등																																			
	④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 공고문 참조 요망